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16
------------	------

발의연월일 : 2017. 3. 10.

발의자 : 김영춘 · 최인호 · 김해영

전재수 · 정인화 · 안규백

서형수 · 윤관석 · 김철민

김수민 · 박주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도로의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의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대형 참사를 초래하는 등 다른 구역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손실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모든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범칙금 및 과태료의 액수가 구역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미국 뉴욕주의 경우 주·정차 구역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금액을 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로 사고유발가능성이 높은 도로의 모퉁이, 대중교통의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 설치되는 정차·주차금지표지의 경우 미국등의 사례처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을 명기하고 설치를 확대시켜 운전자들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며, 해당 정차·주차금지표지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이에 협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방해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등은 제33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 정차·주차금지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정차·주차금지표지에는 정차·주차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의 액수를 함께 표기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나. 시장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의 정차·주차금지표지를 설치·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종래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 중 도로의 모퉁이·대중교통의 정류지·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주·정차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주정차특별

금지구역으로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라. 제33조에 따른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의 액수는 제32조에 따른 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보다 2배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161조제3항 및 제162조제4항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제33조에 따른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는 교통안전시설 중 정차·주차금지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정차·주차금지표지에는 해당 안전표지와 관련된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의 액수를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및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을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차·주차금지표지를 설치·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의2제2항 전단 중 “제3조제3항부터 제5항”을 “제3조제5항부터 제7항”으로 한다.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3.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구역보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하 “주정차특별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2. 대중교통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대중교통의 운전자가 그 대중교통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4.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

제34조의2 중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를 각각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로 한다.

제16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160조제3항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33조를 위반하여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제32조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2배 이상으로 가중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6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156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을 정하여 부과하는 경우 제33조를 위반하여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에 부과하는 범칙금은 제32조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범칙금의 2배 이상으로 가중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 설>

②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생 략)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을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차·주차금지표지를 설치·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④ ·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⑥ 제5항-----

-----.

⑦ -----제5항-----

-----.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조제5항부터 제7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로 본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3.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
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
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
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
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
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
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
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
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
미터 이내인 곳

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
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서
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구역보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
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구역(이하 “주정
차특별금지구역”이라 한다)에
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다. 소화전(消防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
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2. 대중교통의 정류지(停留地) 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대중교통의 운전자가 그 대중교통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4.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
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제160조제3항
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33조를 위반하여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에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제32조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2배 이상으로 가중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

제162조(통칙) ① ~ ③ (생략)

<신설>

다.

제162조(통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제156조제1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을 정하여 부과하는
경우 제33조를 위반하여 주정
차특별금지구역에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에 부과하는 범칙
금은 제32조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범칙금의 2배 이상으
로 가중하여 부과하여야 한다.